

## 『경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』 연혁

기준시점	지 역	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	최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
1990.02.19 ~ 1995.02.28	경기도 전역	1,500만원 이하	500만원
1995.03.01 ~ 1995.10.18	경기도 전역 (강화군, 용진군, 김포군 검단면 제외 1))	1,500만원 이하	500만원
1995.10.19 ~ 2001.09.14	경기도 전역	2,000만원 이하	800만원
2001.09.15 ~ 2008.08.20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 2)	4,000만원 이하	1,600만원
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	3,000만원 이하	1,200만원
2008.08.21 ~ 2010.07.25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0.07.26 ~ 2013.12.31	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	6,500만원 이하	2,200만원
	②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	5,500만원 이하	1,900만원
	위 ① 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	4,000만원 이하	1,400만원
2014.01.01 ~ 2016.03.30	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	8,000만원 이하	2,700만원
	②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위 ① 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	4,500만원 이하	1,500만원
2016.03.31 ~ 2018.09.17	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	8,000만원 이하	2,700만원
	② 안산시, 용인시, 김포시 및 광주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위 ① 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18.09.18 ~ 2021.05.10	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, 용인시, 화성시	1억원 이하	3,400만원
	② 안산시, 김포시, 광주시 및 파주시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	위 ① 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	5,000만원 이하	1,700만원
2021.05.11 ~ 2023.02.20	①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, 용인시, 화성시 및 김포시	1억 3천만원 이하	4,300만원
	②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 및 평택시	7,000만원 이하	2,300만원
	위 ① 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	6,000만원 이하	2,000만원

2023.02.21 ~ 현재	①「수도권경비계획법」에 따른 「과밀억제권역」, 용인시, 화성시 및 김포시	1억 4천500만원 이하	4,800만원
	② 안산시, 광주시, 파주시, 이천시 및 평택시	8,500만원 이하	2,800만원
	위 ①및 ②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	7,500만원 이하	2,500만원

1) 1995. 3. 1. 인천광역시로 편입

2) 2001. 1. 29. 경기도 지역 중 일부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

출처: 부동산케이스노트 <https://realscasenote.com/>